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연 월 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국내 수입·제조·유통되는 사료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료 산업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사료 관련 행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유관기관 및 사료(원료) 제조·수입업체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개선안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제조업 휴업시 사유서 제출 폐지(안 제7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 1) 제조업자가 휴·폐업 신고시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
- 2) 신고수리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조업자 휴·폐업 신고 시 사유서 제출의무를 폐지함.
- 3) 불필요한 서류 제출의무 삭제로 국민들의 신고 편의 증대가 기대됨.

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의 실적 요건 폐지(안 제16조제1항제3호 삭제 및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신규지정 시 “최근 3개월 간의 생산실적”을 제출하도록하여 신규사료업체에 부담한 진입장벽으로 작용.
-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신규지정 시 “최근 3개월 간의 생산실적사본” 제출 요건을 폐지함.

3) 불필요한 진입장벽 해소로 신규업체에 공정한 기회 부여가 기대됨.

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의무교육 시간 하위 위임(안 제16조제2항제3호 개정)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및 지정받은 자는 의무적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 교육을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하고 정기교육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는 의무시간(18시간 이상)을 삭제하여 하위규정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무교육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식품 등 유사제도에 비해 장기인 의무교육시간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비용·시간 절감.

라. 공동구매 사료수입절차 완화(안 별표 6 개정)

1) 공동구매를 통한 사료원료 수입 시 공동구매참여자 중 정밀검정 대상자 있는 경우 전체에 대해 실시하고 있음.

2) 동일 선박을 통한 사료원료 공동구매 시에는 공동구매건(단체) 별로 정밀검정 후 1년 이내 재수입 여부를 정하도록 함.

3) 공동구매사료에 대한 정밀검정 효율화로 통관기간 단축 및 체선료 등의 비용 절감 기대됨.

마. 행정처분의 누적회차 적용 기준 명확화(안 별표 8의2 및 별표 11 개정)

1) 행정처분의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차수 적용 시 위반행위를

어느시점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 해석이 모호함.

- 2) 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적용 기준을 행정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또는 4년(사료시험검사기관)이 지난 처분은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
- 3) 행정처분의 적용례 명확화로 행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함.

바. 사료재검사 신청 서식 신설(안 별지 제23호의2 서식 신설)

- 1) 사료검사기관의 사료검사기관에 이의가 있는 사료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그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나, 검사신청과 달리 재검사에 대해서는 신청 서식이 없음.
- 2) 재검사 신청 서식을 마련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인의 편의 향상을 도모.

사. 사료검사원증 서식 변경(안 별지 제35호 서식 개정)

- 1) 사료검사 및 수입사료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료검사원이 소지하는 증표 규격을 일반적인 신분증과 동일한 크기로 변경하고, 재질을 PET-G 재질로 할 수 있도록함.
- 2) 사료검사원증 크기 변경 및 재질 다양화로 발급업무의 편의 향상 도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6항”을 “법 제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6항”으로, “사료 제조업등록증과 변경 내용 및 사유서를”을 “사료제조업등록증을”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18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제17조제1항제1호의 신규교육훈련”으로 한다.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훈련
2.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교육훈련

별표 6 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제2호가목7)”을 “제2호가목2)사)”로 한다.

가. 정밀검정

1) 내용 : 물리적 ·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
정

2) 대상

가) 최초로 수입하는 사료 및 재수입하는 사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는 종전에 정밀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처음으로 재수입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사료수입업자가 종전에 정밀검정을 받은 후 재수입하는 동일한 사료

(2) 수개의 제조업체가 동일한 선박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로부터 구매하여 수입(이하 “공동구매”라 한다)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인 사료로써 종전에 정밀검정을 받은 후 재수입하는 동일한 사료(단순 집하하는 곡류 및 섬유질류의 경우 제조국가가 같아야 하며, 대두박 및 농축단백질의 경우 제조국가 및 수출하는 자가 동일하여야 함. 본호에서 이하 같다). 다만, 종전에 공동구매에 참여했던 제조업체가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고 동일한 사료를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국내외에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사료

다) 수입신고에 따른 정밀검정 또는 무작위표본검정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은 사료로서 재수입하는 같은 회사 같은 제품

라) 법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료

마) 거짓 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

아 수입된 사실이 있는 사료

바)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위반한

수입신고자가 수입하는 사료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밀검정 대상사료로 고시한 사료

나. 무작위표본검정

1) 내용 : 정밀검정대상을 제외한 사료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정

2) 대상

가) 정밀검정을 받았던 사료와 같은 회사 같은 제품

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다만, 정제·가공을 거쳐야만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 서류검정

1) 내용 : 신고 서류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정

2) 대상 : 수입신고 대상 사료. 다만, 다음 사료에 대해서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서류검정만 실시한다.

가)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사료

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사료
(이 경우 국내외 공인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

명서를 제출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 박람회·전시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사료
별표 8의2 제1호다목 중 “(나목에 따른”을 “(가중처분 적용”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4년 이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11 I 제2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
를 적발한 날(현물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시료채취일을 말한다)을 각
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별표 11 I 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I 제5호부터 제7호까
지를 각각 삭제한다.

4의2. 제4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
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
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
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6.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가. 사료공정에 위반된 사항 중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과 가족의 성장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표시기준 위반의 경우로서 일부 제조품에 대한 제조일 등의 표시 누락 등 그 위반 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 작동상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 법 제24조에 따라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사료의 폐기·회수 등을 성실히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사료를 제조하거나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마. 그 밖에 사료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호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뒤에 새로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종전의 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료재검사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제조(수입)업자		
	주소		
	(전화번호:)		
사료내용	사료종류: 배합(), 단미(), 보조()	성분등록번호	
	사료명칭	사료 등록성분	
	제조(수입)일		
검정의뢰 성분명			
재검사 사유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 해당란에 “o”		

「사료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 사료의 재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 2. 검정에 사용된 시료의 채취·분석방법 등에 관한 서류	수수료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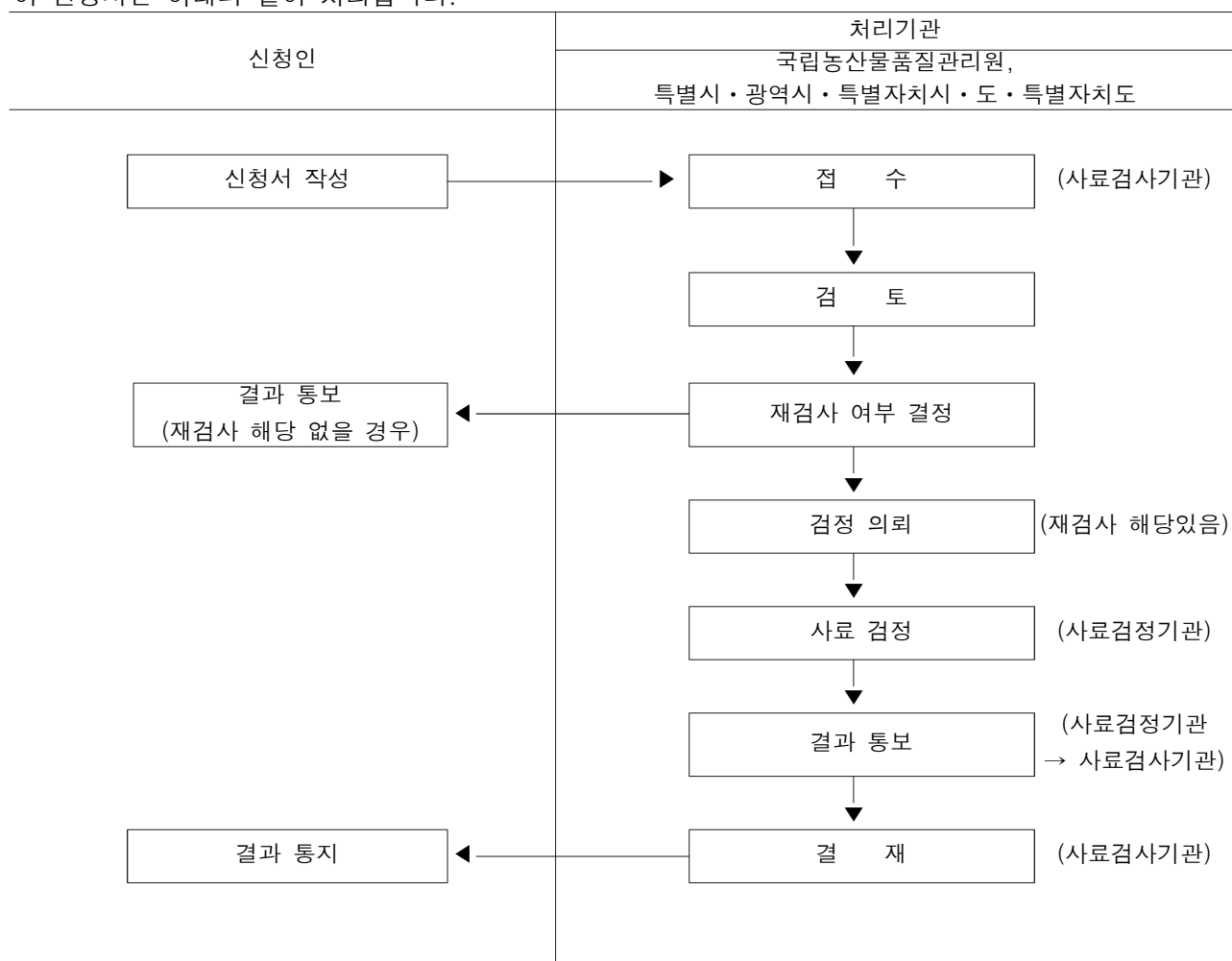
처 리 절 차

<재검사 사유>

사료검사기준(고시) 제22조제3항 1~6항

- 1항. 시료의 채취 및 취급의 방법이 위반되었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 2항. 검정기관의 검정방법 또는 검정과정이 위반되었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 3항. 검정방법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검정기관의 분석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사료검정기관이 검정하였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근거가 있는 경우
- 4항. 검정결과가 제20조의 오차 적용 범위의 2배 이내인 경우
- 5항. 성분량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재가공한 경우(검사대상 사료 전부를 판매·공급하기 전)
- 6항. 검정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증명서가 있는 경우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앞 쪽)

제 호
사료검사원증
사 진 3cm×4cm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발급기관장

55mm×85mm[PET-G 카드(연노란색) 또는 백상지]150g/m²

(뒤 쪽)

소속/직급: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사료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사료검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이 증을 소지한 자는 「사료관리법」 제19조 제2항·제21조제2항·제24조 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시설과 서류 등을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시설 변경의 신고범위 등)	제7조(시설 변경의 신고범위 등)	제7조(시설 변경의 신고범위 등)		
① 법 제8조제6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제조시설을 말한다.	① 법 제8조제3항----- ----- ----- -----.	① 법 제8조제3항-----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제조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시설변경신고서에 <u>사료제조업등록증과 변경 내용 및 사유서</u> 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6항----- ----- ----- ----- <u>사료제조업등록증</u> 을 ----- -----.	② 법 제8조제6항----- ----- ----- ----- <u>사료제조업등록증</u> 을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등) ①	제16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등) ①	제16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	----- ----- ----- ----- ----- ----- ----- ----- ----- -----	----- ----- ----- ----- ----- ----- ----- ----- ----- -----		

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최근 3월간의 생산 실적 사본

4. ~ 6.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적용을 최소한 1개월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2. (생략)

3.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18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③ ~ ⑧ (생략)

제17조(교육훈련 등) <신설>

① ~ ③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4. ~ 6.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1항제1호의 신규교육훈련-----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7조(교육훈련 등)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훈련

2.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교육훈련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와 같음)
